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

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6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규칙"이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9조에 따라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제정하는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
- 2. "소관부서"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3. "주민"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의견제출)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은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(이하 "의견제출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제4조(의견제출 제외 대상)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 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
 - 2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
- 제5조(의견제출 방법)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 서(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
 -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)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

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·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

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"의견제출인"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- 제7조(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) 소관부서의 장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제6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- 제8조(의견의 반영)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[] 제정 규칙의 [] 개정 의견제출서 [] 폐지

※ []에는 해당되	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	
의견제출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성별 (남, 여)
※ 공동 의견제출 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기재	- テクリカケ・세뉴クロ		
	A	(전화번호 :)
 관련			
규칙 및 조형	J-		
의 견 ※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			
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 및「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
			년 월 일
	의견제출인		(서명 또는 인)
오산시장 귀하			
참고자료			
유 의 사 항			
의견 및 참고자료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			